

부산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48123(본소), 2017나48130(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8. 3. 22

판결선 고 2018. 4. 19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5. 17. 선고 2015가단210417(본소),
2016가단21470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동부 지원 남부등기소 2010. 5. 31. 접수제29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22, 894, 521원 및 위돈중 50, 000, 00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이 사건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제 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 6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심 법원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없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판사 강주혜 판사 김지현

별지